

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

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

# 국민 취업 지원제도

## 이름



### ■ 국민취업지원제도란

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

소득(최대 300만원)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

\* 법적 근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# 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| 구분               |          | I 유형  |                 |   | II 유형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요건심사형   | 선발형             |   | 특정계층<br>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      | 청년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청년  | 비경험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지원대상             | 연령       | 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소득       | 중위소득<br>60% 이하  | 중위소득<br>120% 이하 | 중위소득<br>60%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위소득<br>100% 이하 |
|                  | 재산       | 4억원 이하  |                 |   | 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취업경험     | 최근 2년 이내<br>100일 또는<br>800시간 이상   | 무관              | 최근 2년 이내<br>취업경험이<br>없거나 100일<br>또는<br>800시간 미만 | 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지원<br>내용         | 취업지원서비스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</li> <li>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</li> <li>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구직촉진수당   |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<br>최대 300만원(월50만원×6개월)  |                 |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취업활동비용   | -   |                 |   |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취업성공수당   | 취(창)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조기취업성공수당 | I 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(창)업시 1회 50만원 지급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지원기간             |          | 12개월(6개월 연장가능)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구직촉진수당<br>지원 제외자 |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계급여수급자</li> <li>실업급여·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</li> <li>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- (소득·재산)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①신청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  
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  
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\* (2022년 기준 중위소득)

(단위: 원/월)

| 구분        | 1인가구      | 2인가구      | 3인가구      | 4인가구      | 5인가구      | 6인가구      | 7인가구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중위소득 100%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
| 중위소득 60%  | 1,166,887 | 1,956,051 | 2,516,821 | 3,072,648 | 3,614,709 | 4,144,202 | 4,668,355 |
| 중위소득 120% | 2,333,774 | 3,912,102 | 5,033,641 | 6,145,296 | 7,229,418 | 8,288,405 | 9,336,710 |

- (취업경험)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

-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
-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-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휴업신고기간,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와 사무실 없는 기간 제외
-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  - 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056,000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▣ 신청방법

- (신청방법) 온라인 (www.kua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(방문) 연중 상시 접수(본인이 신청)
- (제출서류) 취업지원 신청서, 본인·가구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 
※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**진주고용복지+센터**

전화 055-753-9090  
위치 진주시 진양호로 563(장대동) 2층

**사천고용복지+센터**

전화 055-760-6590  
위치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13 4층(명민빌딩)

**하동고용복지+센터**

전화 055-884-8219  
위치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-3

**거창고용복지+센터**

전화 055-949-6507 / 6511 / 6514  
위치 거창군 거창읍 송정 8길 6(그린빌딩 1층)